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제정 2022. 12. 9 조례 제2353호 일부개정 2022. 12. 30 조례 제236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24. 5. 10 조례 제2511호(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) 일부개정 2025. 5. 2 조례 제260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25. 9. 26 조례 제2675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답례품의 종류) ①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·채취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·제조한 물품 및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체험, 관광,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선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24, 5, 10〉
 - 1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(유기농수산물, 무농약농산물, 무항생제수산물 등) 및 유기식품 등
 - 2. 「축산법」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
 - 3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)을 받은 축 산물
 - 4.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통주
 - 5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

- 6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
- 7.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
- 8. 용인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
- 9.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
- 10. 용인시의 마을기업, 사회적 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
- 11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 예품
- 12.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
- 13.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·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및 물품
- 제3조(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) ① 시장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- 1.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
 - 2. 답례품의 보관·상품화·품질관리·배송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
 - 3.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
 - 4. 최근 3년간 생산, 공급 및 매출액
 - 5.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
 - 6.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
 - 7.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 이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) ① 시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
- 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- 1.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
- 2. 제3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
- 3.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답례품선정위원회)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답례품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제2조의 답례품 품목 선정
 - 2.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 -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 -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. 〈개정 2022. 12. 30, 2025. 5. 2〉
 -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 - 1.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
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 가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
 - 나,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다. 상품 · 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
 - 라.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를 대표하는 사람
 - 마. 농업·축산업 등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
 - 바.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-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⑦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⑧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6조(답례품의 구입)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(이하 "기부자"라 한다)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. 〈개정 2025. 9. 26〉
- 제7조(지정 금융기관의 위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
 - 2.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
 - 3.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
 - 4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
 - 5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
- 제8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향사랑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 - ② 기금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・관리한다.
- 제9조(기금운용관 등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.
 - 1. 기금운용관: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 - 2. 기금출납원: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
 -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1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 〈개정 2022. 12. 30, 2025. 5. 2〉
 - 1. 자치행정국장,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
 - 나. 회계사,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다.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
- 제12조(위원의 임기)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13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.
 - ③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 및 회의 결

- 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.
-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- 1.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- 2.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
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 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
- 제14조(심의위원회의 간사)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
 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1.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 -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· 보존
 - 3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제15조(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)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또한,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16조(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등)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활동 및 홍보·행사 추진
- 2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관련 공모전 개최
- 3. 그 밖에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, 9, 26]

- 제17조(기부자 예우 및 지원)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 - 1.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
 - 2.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,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
 - 3.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
 - 4.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, 9, 26]

제18조(포상)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「용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 9. 26]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우선 답례품의 선정,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심의

위원회를 구성 · 운용할 수 있다.

-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·운용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.
- 제3조(기부금 모집·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)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제5조제5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,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부칙〈2022. 12. 30 조례 제236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자치행정실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"자치행정실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 한다.

③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〈2024. 5. 10 조례 제2511호,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1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 예품
- ② 부터 ① 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〈2025. 5. 2 조례 제260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생략〉

② 생략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자치행정국장"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자치행정국장"으로 한다.

(6) 부터 (14) 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〈2025. 9. 26 조례 제267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